

외국국적 학생의 공교육 진입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진현경*

요약 본 연구는 외국국적 학생의 공교육 진입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교육부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요 추진체계, 공교육 진입 절차, 다문화예비학교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외국국적 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둘러싼 정책에 구조적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국적 학생에 대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고 통계를 일치 시켜야 한다. 둘째, 의무교육이 아닌 시기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연령대의 외국국적 학생들이 학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법무부의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교육청의 다문화예비학교 연계를 통해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한국어교육에 대해 이수제와 평가제를 병행함으로써 학력 심의에 대한 우려를 위한 서류를 현실화해야 한다.

주요어 다문화학생,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공교육 진입, 다문화예비학교

*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 행정학(이민정책), 연구원, tokki9489@naver.com

1. 서론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전체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21년에 16만 명을 초과하였다. 증가한 다문화학생은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2018년 이후에는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의 증가 속도보다 외국국적의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집중거주 지역¹을 중심으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8a; 2019a; 2020; 2021). 이렇듯 외국국적 학생의 빠른 증가는 한국국적 다문화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금의 다문화교육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다. 아동의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만 18세 미만의 모든 다문화학생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의무교육(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2018년 이후 외국국적의 다문화학생 비율이 전체 다문화학생의 약 20%를 차지하면서(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8a; 2019a; 2020; 2021) 이들의 공교육 진입 문제가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08년, 2010년, 2013년, 2022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력 증명이 곤란한 사람에 ‘다문화학생’과 함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을 둬으로써 외국국적의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교육부 2021: 2).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음에도 외국국적의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

1 외국인주민 집중거주 지역은 88개 시·군·구로 경기도 23개, 서울특별시 18개, 경상북도 8개, 충청남도 7개, 인천·경남 6개 지역 등이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안산시(93,639명)에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며 경기도 수원시(66,490명), 경기도 화성시(63,493명), 서울특별시 구로구(54,878명) 순으로 집계되었다(행정안전부 2021: 3).

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은 아포스티유² 미가입국의 경우 학교 입학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한국어 습득이 원활하지 않으며 공교육 진입에 대한 부모의 정보 부족 등으로 쉽지 않다(류영철 2016: 90). 그리고 의무교육(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이 끝나는 시점(17~19세)에 입국한 외국국적의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는 입학 정원 내에서 고등학교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입학할 수 있어 공교육 진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9).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외국국적의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교육부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요 추진체계, 공교육 진입 절차, 다문화예비학교를 연구범위로 설정한다. 그리고 지역별 다문화학생의 현황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전제는 본 연구는 외국국적의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 정책 현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소속이 중요한 한국사회에서 학교는 외국국적의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에게 가장 안전한 사회적 장치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인적자원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외국국적의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건전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진입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2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은 문서발행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4일에 발효하였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국적의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는 한국에서 외국 학력 인정에 어려움이 없지만(교육부,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 인정학교 목록 안내, 외교부,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 현황)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국적의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는 외국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하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14).

2. 개념적 논의

1) 외국국적 학생의 범위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가족의 자녀에 대해서 행정상 지원을 근거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을 ‘외국인주민 자녀’라고 하고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이주배경 청소년’이라고 한다. 한편, 법무부는 ‘이민배경 자녀’, ‘중도입국 자녀’라고 하고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學生)’은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초·중등 교육법」제12조에 따르면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의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초·중등교육법」제13조 취학의무). 이와 더불어 2021년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었다. 이로써 「초·중등 교육법」에서의 ‘학생’의 범위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8~19세)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에서 ‘귀국학생등’의 범위를 ①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②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④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학생’의 범위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라고 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경기도 조례 제6162호)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

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정책 용어로서의 ‘다문화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의 ‘다문화학생’과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교육부는 ‘다문화학생’의 유형을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한국국적),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한국국적+외국국적), 외국인가정 자녀(외국국적(등록외국인·미등록 외국인))로 나누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의 정책 용어로서의 ‘다문화학생’은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자녀’나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의 자녀’ 또는 ‘이주배경청소년’ 그리고 법무부의 ‘이민배경 자녀’ 또는 ‘중도입국 자녀’보다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부에서 규정한 다문화학생의 유형을 기준으로 ‘외국국적 학생’의 범위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에서 외국국적의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의 자녀’로 정하기로 한다 (이하 ‘외국국적 학생’이라 기술함).³

2) 학교의 특성과 기능

일반적으로 집단응집성은 그 집단에 매력을 느끼고 서로 결속하며, 그 집단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는데 집단응집성이 형성되면 구성원들이 집단에 계속 즐겁게 머물고자 한다. 집단응집성이 높아지면 구성원들은 집단의 규범에 동조하는 태도가 강해지고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충성심도 강화된다(윤재풍 2014: 317).

3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용어를 반영한 외국국적 학생의 범위(본 연구자가 재구성)

① 중도입국 자녀: 다문화학생(교육부-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자녀(외국국적)), 다문화가족의 자녀(여성가족부-결혼이민자의 자녀(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의 청소년(외국국적)), 중도입국자녀(법무부-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자녀(외국국적)), 외국인주민 자녀(행정안전부-국제결혼가정 자녀(외국국적)) ②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교육부-외국인가정의 자녀(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여성가족부-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외국국적)).

학교의 주요 구성원은 교사와 학생으로 미성숙한 학생을 성숙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교사는 지속해서 학생에게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부모가 보호자가 되어 교육의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면적인 상호작용과 애정적 유대를 통해 다면적인 인간관계(또래 친구, 학교 선배, 선생님 등)를 경험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친교하고 정을 나누면서 심리적 애착과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나간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사회적·심리적 욕구에 근거해 조직되고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며 구성원에 대한 영향력은 인격·감정 및 정서를 통해 전달된다.

학교가 집단응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⁴의 교육이념을 근간으로 하여 구성원들이 수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애정적 유대를 통해 인간적이며 정서적인 만족감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학생이 공교육으로 진입하여 집단응집성을 가진다면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되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선행연구

2017년 다문화학생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 가면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가족의 자녀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된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에는 국내출생이 아닌 중도에 입국한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한국학술지 인용 색인(KCI)에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주로 이들의 한국생활 및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관련된 사회적 측면을 다룬 논문이 다수였다(송원일 2021). 이 무렵 국내출생이 아닌 중도에 입국한 아동 및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과 관련된 논문도 발표되는데 류영철(2016)은 이들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

4 「초·중등교육법」 제1조는「교육기본법」 제9조를 교육목적으로 하여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에게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교육의 이념으로 두고 있다.

화예비학교와 위탁형 대안학교 그리고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그룹면접(FGI)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박창건·박명희(2019)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학급의 운영 실태를 학교조직역량(구조적 측면), 조직지원 풍토,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한 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인제(2019)는 다문화예비학교(한국어학급) 및 특별학급, 다문화대안학교를 SWOT 분석하여 이들의 제도적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보근·장인실(2017)는 다문화예비학교의 초등학교 학령의 중도에 입국한 아동 및 청소년 15명과 현장 교사를 심층 면담하여 이들의 초기 학교 적응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다문화예비학교가 정규 학교 진입 전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의사소통,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급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명희 외(2017)는 다문화예비학교의 역할과 개선과제를 한국어 강사의 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중도에 입국한 학생들에게 다문화예비학교가 공교육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한국사회와의 중요한 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국적, 학급 격차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김명자(2020)는 공교육 진학 전 다문화예비학교의 운영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10대 후반 중도에 입국한 아동 또는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막고 있는 장벽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다문화예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2018년 이후 외국국적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다문화예비학교나 한국어학급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심층면접에 그치고 있어 외국국적 학생의 공교육 진입 과정에서의 제도상 문제점을 통찰력 있게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학급과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 기관의 경우는 공교육 진입 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교육 진입 전 외국국적 학생을 위한 기관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중도에 입국한 외국국적 아동 또는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공교육에 진입했거나 진입 가능한 외국국적 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교육 진입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국적 학생에 주목하고 공교육 진입 과정에서의 제도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외국국적 학생의 공교육 진입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법적근거와 교육부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요 추진체계, 공교육 진입과정, 다문화예비학교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국적 학생의 공교육 진입 정책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각 지역별 외국국적 학생의 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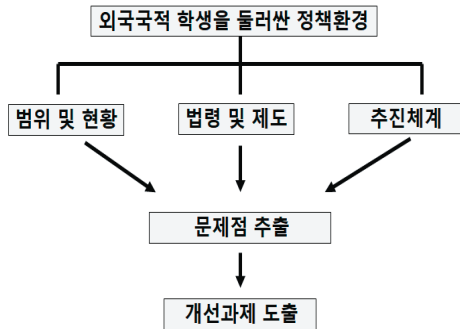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4. 외국국적 학생을 둘러싼 정책환경

1) 외국국적 학생의 현황

2021년 4월 기준 다문화학생은 160,058명으로 전체 학생 수 5,332,075명 중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은 122,095(76%) 명이고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는 37,963(24%)명이다(KESS 교육통계서비스 2021). 다문화학생은 2011년 38,678명에 비해 10년 사이 약 4배가량 증가하였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는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의 증가 속도보다 외국국적 학생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이들의 비율은 꾸준히 20%를 넘고 있다(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8a; 2019a; 2020; 2021). 그리고 학교별 다문화 학생 현황에서 외국국적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교가 22.4%, 중학교가 25.3%, 고등학교가 28.8%인데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는 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편입학 시기에 입국하고 있다(KESS 교육통계서비스 2021).

표 1. 유형별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2014	2017	2018	2019	2020	2021
다문화 학생 수		67,806	109,387	122,212	137,225	147,378	160,058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 출생	57,498 (85%)	89,314 (82%)	98,263 (80%)	108,069 (79%)	113,774 (77%)	122,095 (76%)
	중도 입국	5,602 (8%)	7,792 (7%)	8,320 (7%)	8,697 (6%)	9,151 (6%)	9,427 (6%)
외국인 가정자녀		4,706 (7%)	12,281 (11%)	15,629 (13%)	20,459 (15%)	24,453 (17%)	28,536 (18%)

자료: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4, 2017a, 2018a, 2019a, 2020, 2021.

2021년 4월 기준 경기도 다문화학생 수는 40,667명으로 초등학교에 29,159명(전체 111,371명 중 26.2%), 중학교에 8,116명(33,950명 중 23.9%), 고등학교에 3,353명(14,308명 중 23.4%)이 재학 중으로 전체 다문화학생 160,058명 중에서 25.4%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학교별 다문화학생 중에서 외국국적 학생이 차

지하는 비율은 초등학교가 34.5%, 중학교가 40.2%, 고등학교가 42.9%로 경기도는 외국국적 학생의 중·고등학교 편입학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다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21).

표 2. 경기도 학교별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합계
전체 다문화학생 수		111,371	33,950	14,308	429	160,058
경기도 다문화학생 수		29,159 (26.2%)	8,116 (23.9%)	3,353 (23.4%)	39 (9.1%)	40,667 (25.4%)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 출생	19,096 (65.5%)	4,854 (59.8%)	1,912 (57.1%)	35 (89.8%)	25,897 (63.7%)
	중도 입국	1,707 (5.9%)	914 (11.3%)	474 (14.1%)	2 (5.1%)	3,097 (7.6%)
외국인가정 자녀		8,356 (28.6%)	2,348 (28.9%)	967 (28.8%)	2 (5.1%)	11,673 (28.7%)

자료: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21.

특히, 외국인 주민 수 5만 명 이상 인구대비 5% 이상인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행정안전부 2021: 20)의 외국국적 학생 비율은 약 36~60%를 차지하고 있어 기존의 국내출생 자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다문화교육 정책에 변화가 시급하다.

표 3. 경기도 외국인 집중거주 지역별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 명)

안산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안산시 다문화학생 수		3,762	1,195	582	5,539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1,589(42.2%)	467(39.1%)	161(27.7)	2,217(40.0%)
	중도입국	130(3.5%)	110(9.2%)	88(15.1%)	328(5.9%)
외국인가정 자녀		2,043(54.3%)	618(51.7%)	333(57.2%)	2,994(54.1%)
시흥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시흥시 다문화학생 수		2,360	621	177	3,158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1,251(53.0%)	290(46.7%)	62(35.0%)	1,603(50.8%)
	중도입국	91(3.9%)	51(8.2%)	31(17.5%)	173(5.5%)
외국인가정 자녀		1,018(43.1%)	280(45.1%)	84(47.5%)	1,382(43.7%)

수원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수원시 다문화학생 수		2,292	608	277	3,177
국제결혼	국내출생	1,223(53.4%)	336(55.3%)	136(49.1%)	1,695(53.4%)
가정자녀	중도입국	145(6.3%)	68(11.2%)	41(14.8%)	254(8.0%)
외국인가정 자녀		924(40.3%)	204(33.5%)	100(36.1%)	1,228(38.6%)

자료: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21.

2) 외국국적 학생 관련 법령 및 제도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다문화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규정을 두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89조의 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98조의 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를 법적 근거로 하여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과 거주지가 확인된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다문화교육 진흥조례」를 수립하여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 한국어 예비학급 설치, 다문화교육 증점학교 지정 및 운영, 다문화 국제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제10조(아동·청소년 보호·교육)를 법적 근거로 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

한 지원),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를 법적 근거로 하여 이주 배경 청소년(만 9~24세 이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를 법적 근거로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난민법」제33조(교육의 보장)를 법적 근거로 난민인정자의 자녀가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4.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법적근거

법률	조항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28조 교육
헌법	제31조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75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89조의 2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98조의 2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10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8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30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난민법	제33조 교육의 보장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	경기도조례 제6162호

자료: 법제처의 관련법(검색일: 2022.01.10.)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교육부는 2006년에 다문화·외국인 가정이 증가하자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처음으로 수립하였다. 2007년에는 중앙다문화교육센터⁵를 지정·운영하여 다문화교육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2015년부터는 17개 시·도교

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입학·편입학, 정책학교, 학적 생성 등 공교육 진입 전(全)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2010년, 2013년, 2020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미등록 아동 등 정책 사각 지대에 놓인 다문화학생이 거주지 증명만으로 학교에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8년과 2010년 개정을 통해서는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이 거주지 증명만으로 학교 편입학이 가능해졌다. 2013년 개정을 통해서는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학력인정 근거가 마련되었다. 2020년 개정을 통해서는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공교육 진입 절차를 개선하고 학력심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에는 다문화학생의 국적·연령·한국어능력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학교에서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다문화 친화적 교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비학교 한국어(KSL) 교육과정(12~18년)’, ‘다문화 중점학교(14~18년)’, ‘다문화유치원’을 운영하였다. 2019년에는 기존의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유치원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초·중등, 한국어학급)로 통합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사업을 개편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과보조교재(17종, '15~'20년), 이중언어교재(9종, '16~'18년), 전자책 형태의 이중언어교재(9종, '19~'20년)를 발간하였고 중등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해 한국어교육 원격수업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문화교육포털(<https://www.edu4mc.or.kr/>)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한국어 수준 진단부터 보정·관리까지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⁶’을 구축하고 적용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실 및 징검다리 과정⁷을 시범 운영하고 있

5 2007년에서 2011년까지는 서울대에서, 2012년부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https://www.edu4mc.or.kr/>(검색일: 2022.01.10.).

6 2019년 9월에 개통하였으며 2019년에 초등 3~6학년, 2020년에 중·고등학교, 2021년에 초등1~2학년 순서로 추진되고 있다. 2021년에는 진단·보정시스템과 연계하여 학생이 온라인으로 상호작용(음성인식, 피드백 등) 기반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추가기능 개발이 추진 중이다. <https://ko-ls.or.kr/pt/main.do>(검색일: 2022.02.12.).

다. 또한, 다문화학생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1:1 대학생 다문화 멘토링 운영방식(학습·숙제지도·고민상담 등)을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멘토 상시 근무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전국 단위 수요 파악을 위해 멘티 소속기관 및 대학을 대상으로 멘토·멘티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국적 학생 관련 법령 및 제도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학교 밖 청소년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그리고 외국인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다.

표 5. 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정책 추진경과

연도	주요내용
2006	•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대책」 처음으로 수립
2007	•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중앙다문화센터 지정·운영(서울대('07~'11), 국가평생교육진흥원('12~))
2008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출입국·외국인증명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하여 입대차계약서 등 거주 증명만으로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개정
2009	• 다문화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실시
2011	• ‘글로벌브릿지’운명을 통해 우수 다문화학생 발굴 및 육성('11~'18 폐지) ⁷
2012	•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추진 : 예비학교(15개 지역 26개교) 운영 다문화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공교육 진입 원스톱 서비스 지원) ⁸ 한국어(KSL) 교육과정 도입 및 기초학력 책임 지도 강화

7 2019년부터 학교급 전환기 다문화학생을 위한 ‘징검다리과정’ 시범 지원 (2021년 기준 초등 35개교, 중등 17개교) 모국어와 한국어능력을 고려하여 담당교사와 다문화언어강사가 함께 지도한다. 운영은 2학기에 편입하는 다문화학생을 고려하여 입학 전(1~2월)과 2학기 초반(7~8월)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1)교육내용 ① (중도입국·외국국적 학생) 한국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 한국어 이해 중심 ② (국내 출생 학생) 학교생활의 자기주도성 증진을 돕는 내용 중심 (2)교육영역 ① 생활영역: 학교규칙(시설이용, 집단생활, 예의·예절, 안전교육 등) 생활습관(등·하교, 준비물 챙기기, 가정통신문, 예방접종 확인 등) ② 학습영역: 학습습관(시간표 보기, 교과 이해, 수업 지시 이해 등) 동기부여(자기 주도성, 학습 준비 확인, 발표하기, 대인관계 형성 등)(교육부 2021: 10).

8 글로벌 브릿지 사업 지원 현황(한국연구재단 2022): 수학·과학(7개소), 글로벌 리더십(4개소), 언어(4개소), 예체능(5개소), 현재 종료된 사업임, <https://url.kr/lvm7uq>(검색일: 2022.01.10).

2012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배우는 이중언어교육 강화(이중언어강사 1,200명 양성계획) 다문화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글로벌 선도학교 150개교 육성)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운영 및 다문화학생 학력인정 근거 마련 • 외국국적학생 학적관리 매뉴얼 발간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국적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 발간 •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다문화중점학교'운영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17개 시·도교육청, '15~'19) • '다문화 유치원'에서 다문화 유아 및 유치원 다문화교육 지원 •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과보조교재 발간(17종, '15~'20)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예비학교'를 도입하여 한국어교육 사각지대 해소 • 다문화학생을 위한 이중언어교재 발간(9종, '16~'18)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실시 •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을 위한 모국어 멘토링 운영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2020년 661개교) 사업 개편 •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유치원'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초·중등, 한국어학급)'로 개편하여 시·도교육청 자율성 강화 • 전자책 형태의 이중언어교재 발간(9종, '19~'20) •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구축 및 확대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 중도입국 학생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절차 개선 및 학력심의 대상 확대 • 한국어교육 원격 수업 콘텐츠 제작 및 공유(222차시)

자료: 교육부 2021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12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2021.03.12. 일자 보도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함.

3)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추진체계

법무부의 「제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이민배경 자녀 역량강화'를 중점과제로 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 육성, 성장주기별·대상별 지원

9 다문화학생 전담 코디네이터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가 MOU를 체결하고 2012년 8월부터 예비 학교를 운영하는 시·도 교육청에 배치되어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학력인정→학교배치→사 후관리(학생별 사례관리) 전 과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밖 다문화학생을 적극 발굴하여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정책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두고 있다. 이 중 '청소년기 진로·정서지원 확대와 입국 초기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 지원 확충'의 세부과제가 공교육 진입 전 외국 국적 학생에 대한 주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강화'를 중점과제로 하여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를 주요 추진과제로 두고 있다. 이 중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레인보우스쿨 및 진로지도·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의 세부과제가 공교육 진입 전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주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의 「2021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에서는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 보장, 학교 적응 및 안정적 성장 지원,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조성,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내실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두고 있다. 이 중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절차 개선과 안착, 맞춤형 한국어교육

표 6.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공교육 진입 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

구분	주요 정책 내용	담당부처
법무부 「제 3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8~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 이민배경자녀 역량 강화 -성장주기별·대상특성별 지원정책 강화: 청소년기 진로·정서지원 확대와 입국 초기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 지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시행계획」 (2018~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조기적응을 돕는 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방식 다양화,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내일이룸학교 운영 및 훈련과정 확대 	여성가족부
교육부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제도 안착: 다문화예비학교 확대 및 내실화, 공교육 진입 절차 지원,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입국 초기 한국어교육 강화,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지원 • 다문화교육 법·제도 개선: 다문화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 조성,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절차 개선 	교육부

자료: 교육부(2021: 24), 법무부(2018: 81-82), 여성가족부(2018: 29-31)의 시행계획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지원, 다문화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 조성'이 공교육 진입 전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주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국국적 학생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은 크게 ① 입국 초기 학교생활 및 사회 적응 지원 ② 한국어교육 지원 ③ 공교육 진입에 대한 지원 ④ 청소년기 진로·정서 지원 ⑤ 학교 밖 입국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교육부의 다문화예비학교와 여성가족부의 레인보우스쿨이 주요 추진 체계라 할 수 있다.

표 7.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공교육 진입 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

구분	주요 사업	담당부처
① 입국 초기 학교생활 및 한국사회 적응	조기적응 프로그램(중도입국자녀), 레인보우스쿨 ¹⁰ , 다문화예비학교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② 한국어교육	레인보우스쿨, 다문화예비학교	교육부, 여성가족부
③ 공교육 진입	다문화예비학교	교육부
④ 청소년기 진로·정서	레인보우스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⑤ 학교 밖 입국 청소년	내일이룸학교 ¹¹	여성가족부

자료: 교육부(2021: 24), 법무부(2018: 81-82), 여성가족부(2018: 29-31)의 시행계획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따라서, 공교육 진입 전 외국국적 학생은 여성가족부 또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을 통해 공교육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 또는 진로·직업을 찾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교육부는 외국국적 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위해 법무부의 출입국에 관한 정보를 연계 받아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기관들과 협력하고

10 2021년 레인보우스쿨(만 9~24세 이하 입국 초기 중도입국 청소년) 위탁기관 현황을 보면 한국어특화형(한국어 15개소), 진학준비형(5개소), 진로특화형(5개소)가 운영 중이다. 한국어특화형의 경우는 전 일제와 시간제로 나누어지며 전일제(400시간)의 경우는 디딤돌과정(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 한국어 예비반 등) 100시간, 한국어교육(기본적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 한국어 과정) 200시간, 특화교육(정서 안정, 자존감 향상, 특기 적성 교육, 사회 문화 체험 등) 1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1).

11 내일이룸학교 <https://url.kr/m1c9k3>(검색일: 2022.01.10.)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2021년 1월 기준 전국에 13개소가 운영 중이다(여성가족부 2021).

있다. 하지만 여기서 공교육 진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모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4) 외국국적 학생의 공교육 진입 절차

중도에 입국한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입학·전학·편입학)은 한국국적이거나 외국국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국적 학생일 경우에는 국내 비다문화 학생과 동일하게 학적이 처리되어 공교육 진입이 어렵지 않다. 반면, 외국국적 학생일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거주지 인근 초등학교·중학교에 입교신청을 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입교를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입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학교에 직접 확인하고 입교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학년 결정에 있어서 학력을 증빙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는 학력 증빙 서류에 의해 학년이 결정되는데 외국학교 재학 기간과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년)에 맞춰 계산하게 된다. 만일 학력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경우는 학교나 시·도교육청 학력심의회위원회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후 인정받은 학년으로 입교하게 된다.

표 8. 외국국적 학생의 학년 결정 방법¹²

학년 결정	학력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학력 증빙 서류에 의해 학년 결정 외국학교 재학 기간과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년)에 맞춰 계산	학력심의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학력인정과 학년 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및 학년 결정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 10).

12 외국국적 학생의 편입학을 위한 학력 인정 서류

①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1부(공증), 졸업증명서 1부(공증): 입학 퇴학 연월일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및 학교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②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공증): 입학 퇴학 연월일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및 학교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학생, 학부모): 처음

5)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다문화예비학교

경기도교육청은 본국의 학적 증명이 곤란하거나 한국어 활용능력 결여 등으로 공교육에 진입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일선 학교에 아무런 준비 없이 부정기적으로 편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하였다.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는 외국국적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예비 교육 기간을 두어 이주 초기 집중적으로 언어적, 문화적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교육 진입과 학교 조기 적응을 도모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경기도교육청 2021a: 1). 2021년 3월 기준 경기도교육청은 한국어학급 60개교 78학급, 4기관 4학급을 운영 중이다. 이 중 초등학교 한국어학급은 38개교 47학급이며 중학교 한국어학급은 22개교 31학급 4기관 4학급이다. 그 외 다문화 국제혁신학교 12개교(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개교), 대안교육기관 위탁형 9기관¹³이 운영 중이다(경기도교육청 2021b: 244, 249). 여기서 중학교 한국어학급 22개교와 경기도형 권역별 다문화예비학교 4개 기관이 실질적으로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¹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예비학교는 두 가지 해결해야 하는 과

입국 년 도부터~현재까지) ④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외국인등록증 사본(학생, 학부모) ⑤ 가족관계증명서(공증) ⑥ 여권 사본(학생, 학부모) ⑦ 예방접종 증명서(공증) ⑧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편입학신청서(해당 학교에서 작성).

13 2021년 경기도교육청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현황 (9곳): 고양시 다문화대안학교(고양),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수원), (사)한국다문화복지협회(파주), 나라열학교(시흥),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의정부), (사)한국 청소년 행복나눔(김포), 부천새날학교(부천),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센터(안산),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포천)(경기도교육청 2021b: 244).

14 ① 2021년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 운영 현황 (22곳): 곤지암중학교(광주·하남, 학교밖), 금정중학교(군포·의왕, 학교안), 백신중학교(고양, 학교밖), 신양중학교(김포, 학교안/밖), 생연중학교(동두천·양주, 학교밖), 부천부흥중학교(부천, 학교밖), 성남중학교(성남, 학교밖), 시화중학교(시흥, 학교안), 관산중학교·선일중학교·성안중학교(안산, 학교안/밖), 양평중학교(양평, 학교밖), 여주제일중학교(여주, 학교밖), 동암중학교(의정부, 학교밖), 장호원중학교(이천, 학교안/밖), 선유중학교(파주, 학교밖), 진위중학교(평택, 학교밖), 남양중학교(화성·오산, 학교안), 병점중학교(화성·오산, 학교밖), 비룡중학교·안성중학교(안성, 학교안/밖), ② 2021년 경기도 권역별 다문화예비학교 현황 (4곳):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수원, 학교밖),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센터 안녕학교(안산, 학교밖),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포천, 학교밖), 디딤돌학교(시흥, 학교밖)(경기도교육청 2021a: 10).

제를 안고 있다. 첫째, 지금의 다문화예비학교는 중·고등학교 편입학 연령기의 외국국적 학생이 접근하기에 쉽지 않다. 2021년 4월 기준 경기도교육청 내 중학교는 646개교, 고등학교는 485개교인데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는 중학교에만 22곳이 지정되어 있고 고등학교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다. 물론,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경기도형 권역별 다문화예비학교 4곳(입교 대상 연령: 2021년 기준 2003~2008년)과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9곳을 지정하여 고등학교 연령대에 입국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다문화예비학교는 외국국적 학생이 입교를 희망할 때 거주지와 거리가 멀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할 때 거주지에 가까운 곳으로 우선 배정되는데 이는 그 나이의 학생들은 아직 먼 거리 통학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의 경우도 학적이 있는 상태에서 입교할 수 있어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입학 연령대에 입국한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는 현재 공교육 진입이 쉽지 않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예비학교는 다문화학생 학력심의 대상자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이수 과정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력 인정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력 인정의 근거는 한국어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다문화예비학교의 교육과정은 한국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 즉, 학적 증명이 곤란한 외국국적 학생은 경기도교육청 다문화예비학교를 통해 ‘한국어교육 총 이수 시간 240시간 이상의 수업과 80일 이상의 출석,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의사소통 1~3권 필수’라는 요건을 갖추면(경기도교육청 2021a: 3)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학생 학력심의 과정을 거쳐 학교로 진입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외국국적 학생이 다문화예비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즉, 앞서 추진체계에서 언급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센터 등)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다문화학생 학력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5. 외국국적 학생의 공교육 진입 정책 개선과제

앞서 4장에서 살펴본 외국국적 학생을 둘러싼 법령 및 제도, 추진체계, 공교육 진입 절차, 다문화예비학교의 정책 현황을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통일된 용어와 통계 기준 일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현황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그리고 법무부의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서 4장에서 언급한 주요 추진체계인 법무부와 교육부는 외국국적 학생에 대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외국국적 학생이 공교육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거주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다문화학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거주지가 확인되는 학생도 포함된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자녀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 자녀를 말한다. 여기에서 출생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의 통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자녀는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과 귀화 및 외국국적으로 나눌 수 있다. 법무부의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은 국내에 입국하여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가족의 자녀에 대해서 <그림 2>와 같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현황은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한국국적),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한국국적+외국국적), 외국인가정의 자녀(외국국적(등록외국인·미등록외국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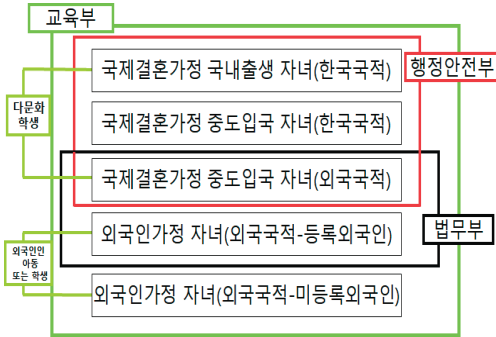


그림 2. 교육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통계 현황 기준

자료: 교육부(다문화학생), 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 자녀), 법무부(연령별 등록외국인)을 통계 현황 기준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화가족 복지정책을 위하여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한국국적), 국제결혼가정의 귀화 및 외국국적(한국국적+외국국적)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연령별 등록외국인을 5년 단위로 묶어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현황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국제결혼가정 또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수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은 외국인가정 자녀(외국국적)의 수가 제외되어 있고 법무부의 연령별 등록외국인은 외국국적인 외국인 현황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9>를 보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현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것은 공교육으로 진입하는 다문화학생이 주로 행정안전부가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자녀 즉,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한국국적), 국제결혼가정의 귀화 및 외국국적(한국국적+외국국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법무부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이 비록 5~6세 연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연령대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외국국적 학생 숫자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공교육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국적 학생이 상당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다문화학생 중 약 30%가 외국국적 학생이라고 가정하면 법무부 현황이 일부 공교육 진입 전 연령을 포함하고 있어 정확하

표 9. 교육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외국인주민 자녀(행정안전부)			다문화학생(교육부)			연령별 등록외국인(법무부)				
	계	7~12	13~18	계	초등	중고등	각종 학교	계	5~9	10~14	15~19
2015	81,482	61,625	19,857	82,536	60,162	21,973	401	41,827	13,354	7,331	21,142
2016	87,827	56,768	31,059	99,186	73,972	24,896	318	50,948	16,128	8,667	26,153
2017	107,370	81,826	25,544	109,387	82,733	26,279	375	59,629	19,310	10,563	29,756
2018	123,381	92,368	31,013	122,212	93,027	28,756	429	69,376	22,220	13,023	34,133
2019	147,581	104,064	43,517	137,225	103,881	32,927	417	77,602	25,403	15,071	37,128

자료: 행정안전부(2016~2020), KESS 교육통계서비스(2015a, 2016a, 2017a, 2018a, 2019a),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2020) 통계 현황.

표 10. 경기도 교육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외국인주민 자녀(행정안전부)			다문화학생(교육부)			연령별 등록외국인(법무부)				
	계	7~12	13~18	계	초등	중고등	각종 학교	계	5~9	10~14	15~19
2015	20,575	15,324	5,251	18,876	14,120	4,750	6	10,226	4,298	1,912	4,016
2016	23,820	15,238	8,582	23,723	17,758	5,956	9	12,277	5,419	2,380	4,478
2017	27,354	20,038	7,316	25,759	19,513	6,205	41	15,184	6,818	3,190	5,176
2018	31,414	22,704	8,710	29,099	22,183	6,878	38	18,436	8,190	4,185	6,061
2019	37,684	25,868	11,816	33,482	25,535	7,905	42	21,134	9,541	5,038	6,555

자료: 행정안전부(2016~2020), KESS 교육통계서비스(2015b, 2016b, 2017b, 2018b, 2019b),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2020) 통계 현황.

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33,482명 중 약 10,000명이 외국국적 학생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표 10>에서 연령별 등록외국인은 21,134명으로 이 중 5~6세 연령을 제외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가 공교육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국적 학생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형성된 가족의 자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해야 하고 통계 현황을 일치 시켜야 한다.

2) 고등학교 편입학 연령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제도 개선

외국국적 학생 공교육 진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4장에서 살펴본 외국국적 학생 관련 법령 및 제도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75조, 제89조의 2는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9조는 초등학교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내용이고 제75조는 중학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에 관한 내용이며 제89조의 2는 고등학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에 관한 내용이다. 이 조항들은 모두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귀국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제19조와 75조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 제89조의 2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즉, 의무교육 기간에 속하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는 학교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의무교육 기간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는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다. 이것은 외국국적 학생이 공교육으로 진입하고자 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는 더욱더 까다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외국인 집중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국적 학생의 고등학교 공교육 진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1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귀국학생등의 입학·전학·편입학

구분	제19조	제75조	제89조의 2
대상	①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② 재외국민의 아동 또는 학생 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아동 또는 학생 ④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⑤ 그 밖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 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전학·편입학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입학·전학·편입학 규정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같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교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절차를 같음하여 거주지를 학교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교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 제1항 및 제89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절차를 같음하여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자료: 법제처 20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2021년부터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대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현재 고등학교는 헌법상 의무교육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의무교육 시기로 보아야 합당하다. 따라서, 외국국적 학생이 보편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도 입학 정원 외에 외국국적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3) 학부모를 교육 주체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에게 부모의 지지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부는 부모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학부모교육 등을 통해 역할을 높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4장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추진체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공교육 진입 전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서 학부모 관련 정책을 찾기는 힘들다. 최근 교육부는 징검다리과정과 예비학교 과정을 통해 초·중학교 입학 예정인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한 사전 준비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 역시 학적이 정해진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시작 전 사전 준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외국국적의 학생을 중·고등학교에 보내야 하는 부모를 위한 사전 준비교육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법무부도 국제결혼가정 중도 입국자녀의 입국 초기 학교생활과 한국사회적응을 위해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¹⁵(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2021)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도 필수교육이 아니고 교육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또한 부모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부모 역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외국국적 학생의 부모는 한국학교에 대한 이해와 공교육 진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중도입국자녀) 3시간 교육을 외국인가정 자녀로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진학에 해당하는 연령(2021년 기준, 2003~2008년생, 경기도형 다문화 예비학교 입학 연령과 동일) 입국자에 한해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필수교육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필수요건으로 부모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을 수료했을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공교육 편입학 시 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중도입국자녀) 교육을 필수화하고 부모 참여를 필수요건으로 두면 앞서 외국국적 학생의 통계 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교육에 진입한 외국국적 학생의 수와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한 외국국적 학생의 수를 파악하기 쉬워 경기도교육청은 외국국적 학생의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잠재적인 교육 사각지대를 찾아 차후 발생하게 될 사회적 갈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중도입국자녀)에 부모 참여를 필수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외국국적 학생의 부모들에

15 법무부 중도입국자녀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은 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 국내에 입국 체류하게 된 미성년의 외국인(F-1-52, F-22)이다. 공통과목(2시간)으로 필수 생활정보, 기초법 질서와 문화, 출입국 및 체류관리 제도가 있는데 이는 성인대상 교육과 별반 다르지 않다. 특수과목(1시간)으로는 학교 교육제도 소개,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안내 등이 있다. <https://url.kr/tzvhyw>(검색일: 2022.01.10.).

게 공교육 진입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의 인프라를 활용하여(예: 교육 장소 제공)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부모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함으로써 외국국적 학생의 학부모교육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는 문화적 차이 외에도 다양한 환경적 배경을 가지고 공교육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부모와의 협력은 공교육 진입 후 지속해서 발생하게 될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4) 학력심의 서류 현실화 방안 모색

우리나라는 아포스티유 가입국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유학을 갈 때 입학서류 부족 등의 문제로 학교 배정이나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국적 학생은 아시아권의 나라가 대부분인데 이 나라들은 아포스티유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앞서 4장 경기도 다문화학생 현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경기도 외국인 집중거주 지역은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로 이 지역은 중국국적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교육 진입을 위한 입학서류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예: 중국의 경우 평균 45일 걸림) 소요된다. 본국에서의 졸업·재학·성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가 필요하다. 이것을 한국으로 보내면 원본 서류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에 있는 본국 영사관에서 원본임을 공증받아야 한다. 즉, 우리나라 공교육 진입 절차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 증빙 서류를 갖추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다(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는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입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학교장의 학력 심의과정을 거쳐 교육청 확인 후에야 외국국적 학생의 편입학이 결정되므로 이 기간 동안 이들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 수 있는 외

국국적 학생도 입국 후 공교육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공백기가 상당 기간 생길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지금의 학력심의 역량으로는 이렇게 제출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외국국적 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학력 증빙 서류는 입학·전학·편입학 시 학년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국적 학생이 소속되었던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예비학교를 두어 본국의 학적 증명이 곤란한 외국국적 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때 학력심의 요건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어 활용능력이다. 이것은 학교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앞서 4장 다문화예비학교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는 외국국적 학생이 미학적 상태에서 예비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으면 경기도교육청의 학력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학력 증빙 서류를 갖추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로 학년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어 활용능력이 중요하다면 학적 증명이 곤란한 외국국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제와 평가제를 병행하여 학년 결정의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예비학교 교육과정(240시간, 표준한국어 의사소통 1~4단계)을 살려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와 여성가족부(레인보우스쿨 위탁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기관과 연계하고 각 시·도 교육청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한국어 이수 및 평가 관련 거점 담당자를 두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법무부·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학력심의의 요건으로 인정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부족한 교육 장소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편입학 연령(2021년 기준 2003~2005년생)에 입국한 외국국적 학생과 학교 밖 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2018년 이후 외국인 집중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학생의 공교육 진입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공교육 진입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교육부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요 추진체계, 공교육 진입 절차, 다문화예비학교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다른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가족의 자녀에 대해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상 지원을 근거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현황은 행정안전부, 법무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었다. 둘째, 공교육 진입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의무교육 시기의 외국국적 학생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에 고등학교 편입학 시기에 입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공교육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았다. 셋째,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공교육 진입 전 주요 추진체계는 학생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학부모를 교육 주체로 활용하지 못했다. 넷째, 우리나라로 입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은 아포스티유 가입국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지금의 학력심의를 위한 서류는 외국국적 학생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섯째, 한국어 수준을 학력심의 근거로 삼아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는 다문화예비학교의 교육과정 때문에 다문화예비학교 외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 외국국적 학생은 한국의 수준과 관계없이 공교육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국적 학생에 대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고 통계를 일치 시켜야 한다. 둘째, 의무교육이 아닌 시기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연령 외국국적 학생들이 학교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도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법무부의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교육청의 다문화예비학교 연계를 통해 학부모를 교육 주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학교교육에 있어 한국어 수준이 가장 중요한 학력 심의 기준이 된다면 외국국적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들이 연계하여 한국어교육에 대해 이수제와

평가제를 병행함으로써 학력심의를 위한 서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제시한 개선과제에 대해 실증분석을 병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것은 외국국적 학생을 다룬 후속 연구를 통해 확장되기를 기대해 본다.

교신: 진현경(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연구원)(tokki9489@naver.com)

Correspondence: Hyun Kyung Jin(Researcher at Multiculture & Peace Institute, Sungkyul University)
(tokki9489@naver.com)

2022.01.12 접수, 2022.02.01 심사, 2022.02.11 게재확정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 2021a, 경기도형 권역별 다문화예비학교 운영지침.
- 경기도교육청, 2021b, 통합자료실, 민주시민교육과, <https://url.kr/6xp3at>.
- 교육과학기술부, 2012,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보도자료, 2100-6524.
- 교육부, 2021,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교육부,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https://ko-ls.or.kr/pt/main.do>.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2021 다문화학생 학력심의회위원회 운영 도움 자료.
- 권보근·장인실, 2017,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적응 요인 연구: 다문화 예비학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2), 51-73.
- 김명자, 2020, 한국 중도입국 청소년 공교육 진입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 연구, 5, 33-54.
- 류영철, 2016,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효율적 방안, 다문화와 평화, 10(1), 72-102.
- 박장진·박명희, 2019, 한국어학급 운영 실태 및 개선방향 모색: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2(4), 1-30.
- 법무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2021, 조기적응프로그램, <https://url.kr/tzvhyw>.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2015 시군구별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 2016 시군구별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2017 시군구별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2018 시군구별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2019 시군구별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 법제처, 2021,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다문화가족 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난민법」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진흥 조례」.
- 송원일, 2021, 중도입국청소년 연구의 10년 동향분석-KCI 등재 논문을 중심으로-, 다문화이동청소년연구, 6(1), 27-55.
- 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 2021, 대한민국정책 브리핑, 내일이룸학교, <https://url.kr/m1c9k3>.
- 윤재풍, 2014, 조직론, 대영문화사.
- 이명희 외, 2017, 다문화예비학교의 역할과 개선과제-한국어 강사의 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3(4), 409-432.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1, 무지개청소년센터, <https://url.kr/4hynpf>.
- 조인제, 2019, 우리나라 다문화학교에 대한 제도적 분석: 다문화 예비학교(한국어학급) 및 특별학급, 다문화대안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4), 771-792.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https://www.edu4mc.or.kr/>.
- 한국연구재단, 2022, 교육·인력양성사업>글로벌 브릿지 사업, <https://url.kr/lvm7uq>.
- 행정안정부, 2016, 201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15.11.01기준).
- 행정안정부, 2017, 20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16.11.01기준).
- 행정안정부, 2018, 201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17.11.01기준).
- 행정안정부, 2019,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18.11.01기준).
- 행정안정부, 2020,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19.11.01기준).
- 행정안정부, 202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
-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4, 2014 주제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5a, 2015 주제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5b, 2015 행정구역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6a, 2016 주제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6b, 2016 행정구역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7a, 2017 주제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7b, 2017 행정구역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8a, 2018 주제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8b, 2018 행정구역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9a, 2019 주제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19b, 2019 행정구역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20, 2020 주제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21, 2021 주제별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Tasks of Policies for Foreign Nationality Student's Entering Public Educ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Gyeonggido-

Hyun Kyung Jin*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improvement tasks by analyzing the issues revealed in the process of foreign nationality student's entering public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 would like to propose some practical solutions to improve the raised structural problems. First,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terms used by each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for foreign students and match statistics. Second, improving of the system is necessary for foreign nationality students of high school age can entering the school.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use parents as educational subjects through the early adaptation program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connection of multicultural preparatory schools by the Office of Education. Fourth, documents on academic background deliberation should be realized by combining the completion system and the evaluation system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words Multicultural Students, Immigrated Children, Children from Foreign Families, Entering Public Education, Multicultural Preparatory Schools

* Multiculture & Peace Institute, Sungkyul University, Immigration Policy, Researcher, tokki9489@naver.com